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8. 27.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4년 8월 12일

나. 발 의 자: 김지연 의원 외 3명

다. 회부일자: 2024년 8월 19일

라. 상정일자: 제25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24. 8. 26.)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지연 의원)

가. 제안이유

- 영등포구는 문래동 일대의 기계금속 산업과 융합한 예술창작촌, 대림동 일대의 다문화, 풍부한 수변 환경, 산업화 등 근현대사 유산, 봄꽃·불꽃 등 대규모 축제, 올해 16회를 맞이하는 초단편영화제 등 다양한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서울시 자치구 최초이자 유일한 법정 문화도시이기도 함. 그리고 이러한 문화자원은 다원성, 창의성을 고양시키는 문화적 표현이나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문화다양성이 증진되고, 문화적 차별 없이 문화적 차이에 따른 소수·비주류 문화가 존중되어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공유될 때 비로소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사회통합, 진정한 문화도시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본 조례에서 문화다양성 보호·증진의 근간이 되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와 증진에 관한 협약」 및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의 이행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문화적 차이”, “문화적 차별”, “문화다양성” 및 “문화적 표현” 등 용어의 뜻을 구체적으로 밝혀 조례의 취지와 내용을 명확하게 함(안 제2조)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시책 마련 등을 구청장의 책무로 함(안 제3조)
- 사회구성원 모두가 문화적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이에 대한 상호 존중과 이해를 위해 노력할 책무가 있음을 명시함(안 제4조)
- 구청장의 실행계획, 실태조사, 지원, 교육 실시, 시정·개선 권고 및 표창에 대하여 정함(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강용철)

- 본 제정조례안은 UNESCO(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과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다양성을 존중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문화다양성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1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됨.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정의)에서 “문화적 차이”, “문화적 차별”의 뜻을 정의하고, “문화다양성”, “문화적 표현”에 대한 정의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따름.
 - 안 제6조(실행계획) 및 제7조(실태조사)에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실태조사를 하여 공표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안 제8조(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부터 안 제9조(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교육)에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함.

○ 검토 결과

- 본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실행계획 수립 및 실시 ▲실태조사 실시 및 공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교육으로 볼 수 있음.
- 먼저, 실행계획 수립 및 실시 관련 상위법인 「문화다양성법」 제6조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하는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의 형식을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이를 통해 영등포구의 실정에 맞는 조사를 시행하여 효과적인 문화다양성 시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짐. 또한,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문화 예술, 학술, 체육, 문화산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는 명확하다고 보임.
- 아울러, 문화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 간의 이해와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기에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는 조항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한편, 우리 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본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화다양성”에는 다문화 정책도 내포하고 있는바, 추후 행정·재정적 지원과 관련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짐.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81
----------	-----

발의연월일: 2024. 8. .

발 의 자: 김지연, 유승용, 양송이
우경란 의원(4인)

1. 제안이유

영등포구는 문래동 일대의 기계금속 산업과 융합한 예술창작촌, 대림동 일대의 다문화, 풍부한 수변 환경, 산업화 등 근현대사 유산, 봄꽃, 불꽃 등 대규모 축제, 올해 16회를 맞이하는 초단편영화제 등 다양한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서울시 자치구 최초이자 유일한 법정 문화도시이기도 함. 그리고 이러한 문화자원은 다원성, 창의성을 고양시키는 문화적 표현이나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문화다양성이 증진되고, 문화적 차별 없이 문화적 차이에 따른 소수, 비주류 문화가 존중되어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공유될 때 비로소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사회통합, 진정한 문화도시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본 조례에서 문화다양성 보호, 증진의 근간이 되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및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의

이행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문화적 차이”, “문화적 차별”, “문화다양성” 및 “문화적 표현” 등 용어의 뜻을 구체적으로 밝혀 조례의 취지와 내용을 명확하게 함(안 제2조)
- 나.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시책 마련 등을 구청장의 책무로 함(안 제3조)
- 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문화적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이에 대한 상호 존중과 이해를 위해 노력할 책무가 있음을 명시함(안 제4조)
- 라. 구청장의 실행계획, 실태조사, 지원, 교육 실시, 시정·개선 권고 및 표창에 대하여 정함(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3. 제정안: “별첨”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및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다. 입법예고(2024. 8. 13. ~ 8. 18.):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및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의 이행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문화다양성을 기반으로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이 향상되고 사회통합과 문화도시 실현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적 차이”란 개인이나 집단의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학력·신체적 능력 등에 따른 행동양식과 표현의 차이를 말한다.
2. “문화적 차별”이란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이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 및 참여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3. “문화다양성”과 “문화적 표현”의 뜻은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원성, 창의성을 고양시키는 문화적 표현이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여 문화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문화적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문화적 차이에 따른 소수

· 비주류 문화를 존중하여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회구성원의 권리와 책무) 모든 사회구성원은 문화적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가지며, 다른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실행계획) ① 구청장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영등포구”라 한다)의 실정에 맞는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에 있어서 영등포구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문화다양성에 대한 영등포구의 실태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다양성 관련시설 운영 및 활동 현황
2.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3.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사회적 인식에 관한 사항
4. 주요 시책사업의 문화적 영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문화다양성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 학술, 체육, 문화산업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나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위한 문화시설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다양한 문화의 공존과 조화를 위한 활동
2. 다양한 문화의 표현 및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활동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 관련 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의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교육) 구청장은 교사, 청소년, 그 밖에 문화다양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문화다양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문화다양성 관련 조약, 법규 및 정책의 내용
2.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민속
3. 문화적 관용 및 문화다양성 가치 실천의 구체적 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10조(권고 등) 구청장은 문화적 차별, 혐오 표현 및 행위에 대하여 공공기관, 단체, 개인 등에게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여야 하며, 권고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지원 및 점검을 할 수 있다.

제11조(표창) 구청장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
· 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
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